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본칭 "945"을 "937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